

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07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16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3. 상정일자 : 제298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11월 30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김기현)

1. 제안이유

-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위탁사무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(예정) 아동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적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, 종사자 교육, 자원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에 재

계약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

나.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 :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위탁 필요성 : 수탁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운영 방식을 토대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통합적 자립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 기반 마련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
-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 지원
-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-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자립지원교육

-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-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

라. 위탁기간 : 3년(2021.1.1. ~ 2023.12.31.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바. 소요예산

- 소요예산 : 450,306천원('21년 예산요구액 기준, 청년자율예산 포함)
- 산출근거 : 인건비 245,595천원, 운영비 34,205천원, 사업비 170,506천원

사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 및 제40조
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"자산형성지원"이라 한다)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민간위탁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(이하 “지원사업단”라 함)의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이하 “민간위탁조례”라 함)¹⁾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²⁾을 추진하고자,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
 -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 지원
 -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
-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<개정 2019. 3. 28.>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9. 3. 28.>
- 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5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-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자립지원교육
 -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 -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
- 지원사업단은 서울시가 최초 설치한 이후 2013년 1월부터 보호종료 아동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민간 위탁 재계약 추진 개요는 다음과 같음.

<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개요 >

- 수탁법인 : 사단법인 서울시아동복지협회(대표 최성수)
- 사 무 명 :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
- 위탁기간 : 3년('21.1.1.~'23.12.31.)
 - ◁ 1차 공개모집 '13.1.1 ~ '15.12.31(2년, (사)서울시아동복지협회)
 - ◁ 2차 재 계약 '16.1.1 ~ '17.12.31(2년, (사)서울시아동복지협회)
 - ◁ 3차 공개모집 '18.1.1 ~ '20.12.31(3년, (사)서울시아동복지협회)
- 사업예산 : 320,000천원('20년기준)
- 위탁유형 : 사무형 민간위탁

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³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아동복지법」제38조⁴⁾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, 보호종료아동 등의 등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을 비롯하여,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까지 수행하는 동 지원사업단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.
- 또한 「아동복지법」제40조⁵⁾에서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위탁을 수행할

-
- 3)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4) 「아동복지법」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 - 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“자산형성지원“이라 한다)
 - 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 - 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 - 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5) 「아동복지법」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민간위탁조례」제4조⁶⁾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
-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(예정) 아동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적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, 종사자 교육,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원사업단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○ 한편 수탁법인인 서울시 아동복지협회는 현재 지원사업단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(2012.1.1 아동자립지원사업단으로 명칭변경)의 산하 시·도 자립지원센터를 2006년부터 운영하였으며, 「아동복지법」 제40조를 근거로 서울시 실정에 맞는 자립지원전담 기관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한 이후에는 민간위탁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2013년부터 현행 지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음.

○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과 결과(2020.8월), 평가점수 83점으로 적정으로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의 평가지표인 ‘인력 및 자원 활용, 사업 이행 절차 준수’ 등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, 가족담당관 정기 지도점검에서 예산 집행에 있어 부적정하게 지출되어 환수 조치된 사례가 있어 재방 방지 노력을 요구받은 바 있음.

6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

<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 결과 주요내용(2020.8월)>

주요성과	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 인력 구성, 다양한 자립 준비 교육 및 상담, 외부 자원 연계, 종사자 역량 강화, 실태조사 등 위탁사무를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수행
보완과제	예산 부적절 집행(공공요금, 출장비 등) 으로 반납 처리되어, 자구 노력 및 지속적인 점검으로 재발 방지 필요
사업총평	대상아동의 자립 기반 마련, 종사자 역량 강화, 통합적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

- 또한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(2020.10월)를 통해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85점으로 적격자로 의결되었음.

4 종합 검토 의견

-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.
- 또한 보호 종료(예정) 아동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적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, 종사자 교육,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,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현 위탁법인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위탁사무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나.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(예정) 아동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적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, 종사자 교육, 자원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

나.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 :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위탁 필요성 : 수탁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운영 방식을 토대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통합적 자립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 기반 마련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
-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 지원
-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-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자립지원교육
-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-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

라. 위탁기간 : 3년(2021.1.1. ~ 2023.12.31.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바. 소요예산

- 소요예산 : 450,306천원('21년 예산요구액 기준, 청년자율예산 포함)
- 산출근거 : 인건비 245,595천원, 운영비 34,205천원, 사업비 170,506천원

사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아동복지법
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"자산형성지원"이라 한다)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오은희 (☎ 2133-5195)